

의안 번호	2450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30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4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구립도서관장 권용희)

### 가. 제안이유

- 중구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도서관 강좌에 대해 수강료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징수 규정 신설(안 제18조)
  - 수강료 기준: 정기강좌 월 3만원 이하, 특별강좌 회 1만원 이하(안 별표2)
- 수강료 감면 및 반환규정 신설(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 3까지)
- 강좌 운영범위 구체화(안 제28조)
  - 독서강좌 → 독서강좌,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로 구체화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도서관법」 제48조
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4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도서관 강좌에 대해 수강료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징수 규정과 수강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고, 강좌 운영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며,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도서관법

제48조(이용료)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도서관법 시행령

제34조(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)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  
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
2. 개인연구실·회의실 등 사용료
3. 회원증 발급 수수료
4. 강습·교육 수수료
5. 도서관 입장료(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)